

## 보건복지부 훈령 제236호

「청원법」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의하여 「보건복지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
2024년 2월 27일

보건복지부장관

### 보건복지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

보건복지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4항 중 “소속 공무원 중 안전 관련 과장”을 “보건복지상담센터장”으로 한다.

제9조를 제12조로 하고,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며,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(대리출석) 내부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위원이 미리 지명한 하위 직급 공무원이 대리출석하여 의결할 수 있다.

제7조(위원의 해촉)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

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
5. 제9조제4항의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

제9조(중전의 제7조)제4항 중 “타인”을 “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타인”으로 한다.

제10조(중전의 제8조)제1항 중 “제6조”를 “제8조”로 한다.

제11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(자료의 제출 등) ① 위원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처리부서의 장에게 청원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처리부서의 장은 그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회에 처리부서의 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처리부서의 장은 청원사항에 대한 처리부서의 의견 표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의회에 출석할 수 있다.

④ 제2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

하며, 처리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제13조(재검토기한) 보건복지부장관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,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## 부 칙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청원심의회 구성) ①~③ (생 략)</p> <p>④ 내부위원 중 1인은 보건 복지부 <u>소속 공무원 중 안전</u> <u>관련 과장</u>으로 하고,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 로 한다.</p> <p>⑤ (생 략) 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5조(청원심의회 구성) ①~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 <u>보건복지상담센터장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(대리출석) <u>내부위원이 부</u> <u>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</u> <u>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위원</u> <u>이 미리 지명한 하위 직급</u> <u>공무원이 대리 출석하여 의</u> <u>결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7조(위원의 해촉) <u>보건복지부</u> <u>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</u> <u>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</u> <u>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</u> <u>있다.</u></p> <p>1. <u>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</u></p>

- 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- 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- 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
- 5. 제9조제4항의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

제6조 (생 략)

제7조(청원심의회 운영) ① ~

- ③ (생 략)
- ④ 심의회 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 활동에서 알게 된 청원 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,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.

⑤ (생 략)

제8조(심의회 개최 요구) ① 청

원을 처리하는 처리부서에서는 제6조 각 호에 해당된다고

제8조(현행 제6조와 같음)

제9조(청원심의회 운영) ① ~

- ③ (현행과 같음)
- ④ -----  
-----  
-----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 
이용하거나 타인-----  
-----.

⑤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심의회 개최 요구) ① -

-----  
--- 제8조 -----

판단되는 경우는 심의회 개최  
를 요구할 수 있다.

②·③ (생략)

<신설>

-----  
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자료의 제출 등) ① 위

원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처리부서의 장에게 청원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처리부서의 장은 그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회에 처리부서의 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처리부서의 장은 청원사항에 대한 처리부서의 의견 표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의회에 출석할 수 있다.

④ 제2항에 따라 처리부서의

제9조(생략)

<신설>

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 
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  
라 처리부서의 장에게 이를  
통지하여야 하며, 처리부서의  
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 
이에 응하여야 한다.

제12조(현행 제9조와 같음)

제13조(재검토기한) 보건복지부

장관은 「훈령·예규 등의  
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  
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 
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 
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  
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  
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  
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 
한다.



##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

○ 심의일시 : . . . ( ) ~ . . . ( )

연번	안건명(접수번호)	심의결과

### < 보건복지부 청원심의회 위원 >

구분	성명	심 의 의 견			서명
		찬성 <small>(심의결과 동의)</small>	반대 <small>(심의결과 반대)</small>	비고	
위원장					
위원					

## 출석 통지서

출석부서	
출석이유	
출석일시	년 월 일 시
출석장소	
유의사항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1. 사정에 의하여 서면의견서로 출석을 대체 하고자 할 때에는 청원심의회 개최일 3일 전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서면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</li><li>2.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고, 서면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석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한다.</li></ol>
<p>「보건복지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」 제1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 부서의 장의 보건복지부 청원심의회 출석을 통지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b>보건복지부 청원심의회 위원장</b> (서명 또는 인)</p>	